

① 기본사항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④ 전자우편주소	
⑤ 납세지	※ 12월31일(사망한 경우 사망일, 출국의 경우 출국일)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		
⑥ 주소지 전화번호	⑦ 주사업장 전화번호	⑧ 휴대전화번호	
⑨ 신고유형	32추계 - 단순율 40비사업자	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	11신고구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40기한후신고
② 환급금 계좌신고	⑫ 금융기관명	⑬ 계좌번호	

구분	금액
⑭ 과세표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⑮ 과세표준란의 금액	

귀속년도	2018년~2020년		귀속년도	2021년~2022년		귀속년도	2023년부터	
	과세표준	세율		과세표준	세율		과세표준	세율
1,200만원 이하	0.6%	-	1,200만원 이하	0.6%	-	1,400만원 이하	0.6%	-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	1.5%	126천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76천원
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544천원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94천원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94천원
5억원 초과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94천원
			10억원 초과	4.5%	6,540천원	10억원 초과	4.5%	6,594천원

무(과소)신고	
납 부 지 연	
기	타
합	계

②③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: ②①-②②

본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접 수 중(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)				
신고인 (대리인)		주 소		접 수 일
첨부서류	1. 장애인증명서(해당자로 한정하며,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 2. 기부금명세서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5호서식) 및 기부금납입영수증(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각 1부 3. 가족관계등록부(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,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			접수번호
				접수인 (서명 또는 인)

210mm × 297mm (백상지 80g/m²)